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362호 2015. 7. 6.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30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4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 조례 제2432호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433호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 19
- 정선군 조례 제2434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정선군 조례 제2435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6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54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7

조 례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30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 손님맞이,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군민운동”이란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군민통합을 위한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
2. “문화군민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추진
2.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
3. 강원도,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
4.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제5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가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이 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민간추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수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 지원(안 제3조)
- 협의회는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추진 및 군민의식 함양, 손님맞이 등 범군민운동 전개(안 제4조)
-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안 제5조)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준용)”을“(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
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
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
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
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
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
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
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
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
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분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

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조직개편(2014.11.19.)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별표 1]
 - 안전행정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2호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정선군이 양성평등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인 조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정책이 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군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시설
 -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시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모든 행정은 제8조의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 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여성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조성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제5조(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등) 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그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주무부서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마다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조성 기준 및 조성사업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 및 요구수렴과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는 일정기간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관련 행정부서·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조성) 군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별 내용을 평가하여 그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동이용시설

가. 여성·임신부, 아동 등의 안전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접근성

다. 양성평등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자,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말한다)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3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지킴이집 지정·운영
3. 범죄 및 위협 예방 군민 모니터링제 운영

제14조(여성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②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가족친화마을 조성)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 정비,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8조(설치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제안·심의 하기 위하여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등 보급
5. 국가 정책에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1.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전문직, 직장,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소외계층 등 여성
3. 정선군의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 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제2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수집

3.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군수가 모범사례 발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모니터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는 군수가 군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2. 그 밖에 일반군민

제24조(모니터의 임기 등)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모니터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한 때

2. 다른 시·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위촉해

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운영) ① 군수는 모니터단에서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단이 군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성평등한 지역으로 발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해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 제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조성사업(안 제8조 ~ 제1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8조 ~ 제22조)
-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운영(안 제23조 ~ 제25조)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3호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업무
2. 인감증명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정기적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계약 체결) 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담당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에

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변상·청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보험 기간은 계속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적용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정선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보험 적용대상 업무 확대(안 제2조)
 - 주민등록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업무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34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뵈는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경비보조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해”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 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정함</u> ----- ----- -----.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u>자</u> 를 군수가 위촉한다.	③ ----- ----- ----- ----- ----- <u>사람</u> 을 ----- -----.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	④ ----- ----- - <u>서로 뽑는다</u>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제5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회의</u>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u>위원회</u> ----- ----- <u>회의</u> <u>를 시작하고</u> ----- -----.
제17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제17조(경비보조 등) ① ----- ----- -----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u> <u>해</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있으며, 경비보조의 기준은 규 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 <u>시행</u> <u>에</u>----- -----.
--	---

개 정 이 유

- 정선군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된 자에게 당해 무형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항)

제222회 정선군의회(2015. 6.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5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정선군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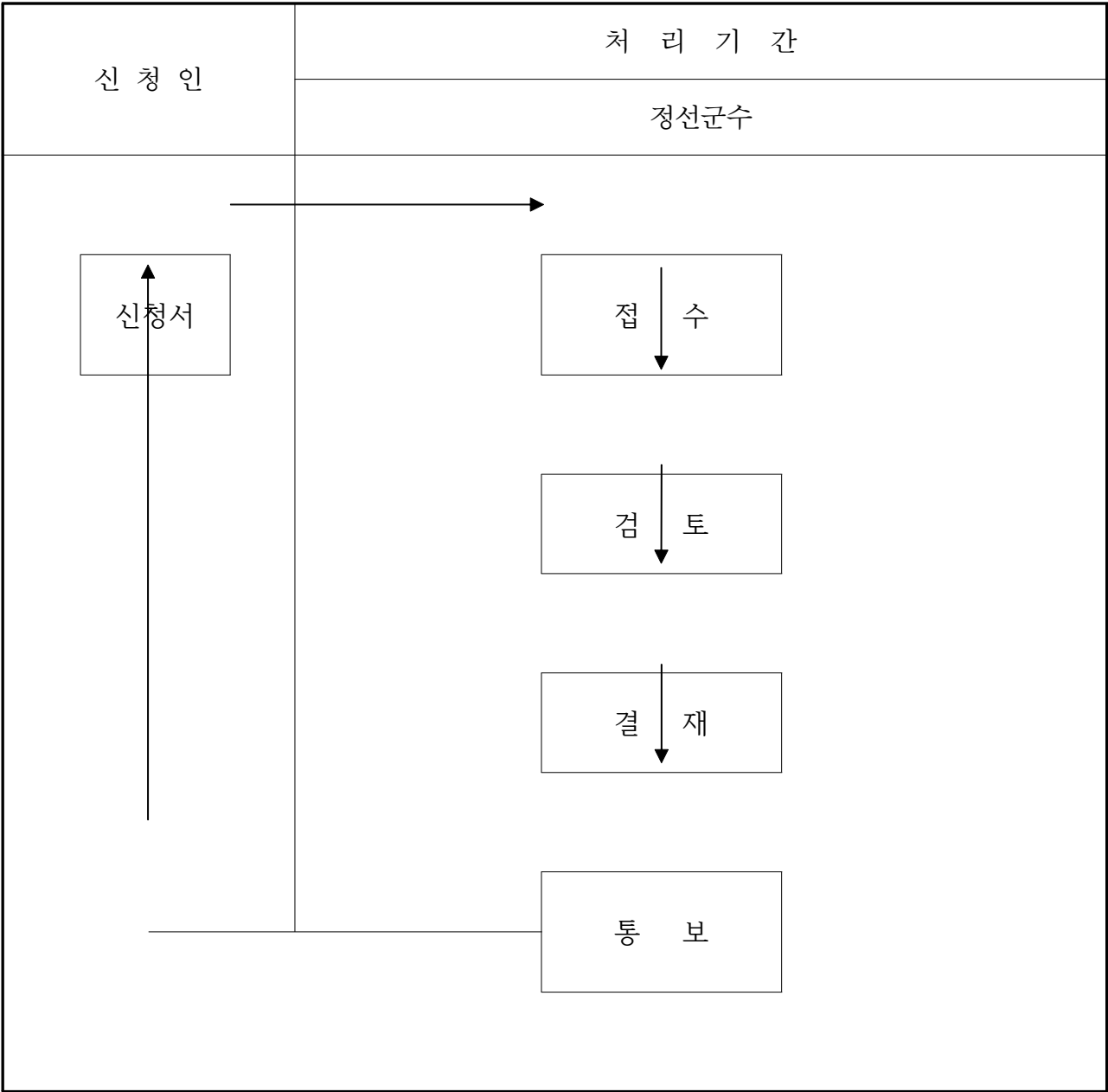
(서명)

정선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축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축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정선군수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부터 제5조)
 - 군수에게 제출된 금연지도원 신청서 확인, 신청인 적합성 검토 후 위촉 여부 결정
 -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 시 서면 등으로 통지, 금연지도원증 회수·폐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 (안 제6조)
 -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요청시 그 외의 지역으로 전환 운영가능
 -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 발급하여 금연지도원 단독 직무 수행 가능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함 (안 제7조 부터 제8조)
 - 예산의 범위에서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활동수당 지급(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시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지급)
 -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 활동실적을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규 칙

2015년도 제5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6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54호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 감독하게”를 “관리·감독하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정함</u> ----- -----.
제3조(지정신청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u>향토문화유산</u> 을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정신청서) ----- ----- <u>정선</u> <u>군(이하 “군”이라 한다)</u> <u>향토문화유</u> <u>산</u> -----.
제7조(경비보조 기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기준은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7조(경비보조 기준) ----- <u>제17</u> <u>조제1항</u> ----- ----- ----- ----- -----.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필요한 사항	6. <u>그 밖에</u> -----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② ----- ----- -----

<u>관리 감독하게</u> 할 수 있다.	----- ----- ----- ----- <u>관리 · 감독하게</u> ----- -----.
-------------------------------	--

개 정 이 유

- 현행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기준은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이나,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7조제2항의 신설로 지급 근거를 마련한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금은 그 성격상 무형문화유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전승활동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어 경비의 일부 보조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승지원금에 대해서는 경비의 보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의 문구 조정(안 제7조)